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규 해설

- 법률 개정 배경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촉법) 개정법률」(2013. 5. 22)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혼입된 포장재 등 재활용 가능품목을 분리회수하고, 철저한 선별을 통해 양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2013. 7. 26) 하였습니다. 회수재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의 신설과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개정 법률은 우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의 근간이 되는 6개품목별 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의 통합과 유통지원센터의 신설, EPR 의무생산자에게 회수선별 책임의 추가, EPR 대상 품목의 확대,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기준의 신설, 지자체의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 설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의 통합(법률 제27조)의 내용과 효과는?

지금까지 의무생산자들은 생산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용기 즉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 발포 합성수지,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대해 품목별 재활용공제조합에 각각 참여약정을 하고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해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의무생산자가 통합된 포장재공제조합에 가입하게 되어 중복 가입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방법과 이행실적 인정방식이 달라지나요?

그간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이행방법은 자가, 개별위탁, 공제조합 참여 방법 중 선택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량에 따른 분담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의무생산자가 자가 또는 개별위탁 방법으로 회수·재활용한 실적이 환경부 고시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그 양에 비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 EPR 생산자에게 재활용 외에 회수 책임을 추가합니까?(법률 제16조)

EPR 의무생산자는 제품의 포장용으로 사용한 포장재량(출고량)에 대해 매년 일정목표의 재활용량(의무율)을 달성토록 하였습니다. 개정법률에서는 의무생산자에게 해당 제품 또는 포장재의 '회수' 책임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포장재의 회수·선별량을 늘려서 회수·선별품의 품질 개선과 재생원료의 품질을 고급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생산자는 제품 또는 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이행계획서와 회수·재활용이행실적을 해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무생산자는 조합이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라.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신설(법률 제28조의 2와 3)

그간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로부터 의무량에 따라 분담금을 수납하고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정법률에서는 통합공제조합에서는 의무생산자로부터 의무량에 따라 의무분담금을 수납 등 업무를 하고, 신설된 유통지원센터에서는 회수·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회수지원금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 통합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를 구분한 이유는?

포장재 공제조합의 통합으로 인해 업무의 과중을 해소하고 회수량의 증대와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유통지원 센터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통합공제조합에서는 재활용의무이행(그린마크제)인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홍보·조사·교육·연구 등을 담당할 것이 예정입니다. 유통지원센터는 회수·선별재활용실적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실적에 대한 지원금 지급 외에 공제조합을 대행하여 회수·재활용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등 업무를 할 것입니다.

㉡ EPR 대상 플라스틱 포장재의 확대는?

동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하면 EPR 대상에 기존의 품목 외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살충제 및 유독물을 포장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제외됩니다. 스티로폴 포장재의 경우 신규 대상 포장재는 인형·장난감, 기계·기구류 및 그의 부품, 임산물, 기타 공산품 등의 스티로폴 재질 포장재가 포함될 것입니다.

㉢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기준의 신설(법률 제9조의 2)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친환경 포장 재질·구조 개선 기준을 고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동 기준을 지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 설치(법률 제13조의 3)

지자체가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사업에 참여토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포장재의 수거선별 또는 재활용한 것을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 그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수입은 위 수익금외에 지자체 재활용센터의 중고물품과 대형폐기물의 판매 수익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 영세수집운반자 지원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과 및 회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도입(법률 제17조의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포장재공제조합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금을 100% 납입하는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그린마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마크는 의무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시행규칙 개정령안 제15조)

의무생산자는 해당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10호 또는 제10호의 2 서식의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회수·선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회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운반계획), 회수·재활용 위탁계약서 사본 등(회수·재활용을 위탁하는 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시행규칙 개정령안 제17조)

의무생산자는 다음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회수·재활용의무 이행결과보고서를(전자문서 포함)에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회수·재활용비용 지급 서류를 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